

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119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탁현

변론 종결 2020. 9. 11

판결 선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C 답 423㎡ 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1. 5. 4. 매매계약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79년생)는 D(1950년생)과 E 사이의 아들이고, 피고(1967년생)는 1991. 4. 1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06. 6. 23. 울산 북구 C 답 423㎡ 의 3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금융계좌로, 2011. 5. 4. 2,000만 원, 2011. 5. 6.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D은 2004. 2. 26. 경 녹내장수술, 2007. 10. 24. 경 신장이식수술, 2009. 5. 25. 경 대장암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고, 2014년 4월경부터 2017년경까지는 계속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다.

D은 피고가 2014년 7월경 가출한 이후 계속 귀가 하지 아니하자 2017. 7. 24.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8. 사망하여 위 소송은 그대로 종료되었다,

마. D의 상속인으로는, D의 처인 피고, D과 E 사이의 자녀들인 F, G,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인 H, I이 있었고, 위 상속인들은 2018. 9. 28. 경 D 소유의 부동산들을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지분씩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1.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2,500만 원에 매수 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2,500만 원을 모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1. 5. 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D의 병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 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4. 2,000만 원, 2011. 5. 6.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또 한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 등기필증을 소지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카카오톡으로 2018. 11. 1. 피고에게 1내가 샀는땅은 두 개다 이전해주실건가요??, 두개 산건 아시죠?? 2천500만원씩 두 개'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9. 8. 29. '땅애기는 안하실건가요??', '무슨 말씀이든 하시죠??'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원고가 카카오톡으로 2018. 12. 12. 피고의 아들인 I에게 '땅은 뭐라더노'라고 문자를 보내자 I이 원고에게 '엄마가 땅은 따로 연락준다는데 어떻게 할건지'라고 답변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2014년 7월경 가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지분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위 등기필증을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7. 10. 17.경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를 사주겠다고 하여 형인 F 명의로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매입해 주지 않아 2018. 11. 11. 피고에게 '땅 두 개'라고 카카오톡 문자메 세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2007 . 10. 17.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피고에게다시 2011. 5. 4.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지분 매매대금으 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11. 5. 4. 당시 피고가 '지목이 답인 이 사건 부동산을 8년 간 자경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니 세금문제가 해결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라고 하여 등기필증만을 교부받 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경할 만한 아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11. 5. 4. 이후 피고에 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2018. 11. 11.까지 7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가 피고에 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에는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이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인 답변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5. 4.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